

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
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2. 7. 20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1992년 5월 28
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1992년 6월 1일

다. 상정일자:제10회의회(임시회) 제2차위원
회('92. 7. 14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:하수과장 송인록)

가. 제안이유

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이혼, 동거,
해외이주, 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세대주
에게 일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
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
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.

나. 주요골자

이혼자, 동거자, 해외이주자, 행방불명
자등의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
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
할 수 있는 단서추가

3.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김현기)

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는
수해보상금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도록
규정되어 있으나, 특수한 경우에는 보상심
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
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4조의 단
서조항을 신설,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
보상하자는 취지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
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없음

5. 토론요지:없음

6. 심사결과: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없음

8. 기타

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
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提出年月日 : 1992年5月28日

提出者 : 麻浦區廳長

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
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이혼, 동거,
해외이주,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세대주
에게 일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
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
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
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이혼자, 동거자, 해외이주자, 행방불명자
등의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
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
있는 단서추가(안 제4조 단서)

3. 개정(안):별첨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별첨

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
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다만, 이혼자·동거자·해외이주자·행방불
명자 등의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
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
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